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446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심리부검 대상자의 명확화 및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	3
2.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	7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4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10.

(3) 회 부 일 : 2025. 1.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등의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살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해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

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II. 검토의견

1. 심리부검 대상자의 명확화 및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

☐ 개정안은 심리부검 조문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등의 사후관리 업무의 주체로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안 제1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u>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u> 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u>자살시도자등의</u>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 ----- ----- ----- <u>유족에</u> ----- ----- ----- ----- ----- ----- ----- ----- <u>당사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u>자살시도자</u>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u>자살시도자등을</u> 알게 된 경우 그 <u>자살시도자 등에게</u> 관할 구역 안에	제12조의2(<u>자살시도자등의</u> 사후관리) ① ----- ----- <u>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u>

현행	개정안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u>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u>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 ⑧ (생략)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u>긴급구조기관</u>”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u>긴급구조대상자</u>”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u>도자등”이라 한다)</u>-----<u>자살 시도자등에게</u>-----. 1. 2. (현행과 같음) ② <u>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u>-----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u>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서의 장</u>-----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 ----- -----“<u>긴급구조기관</u>”----- ----- ----- ----- -----

현행	개정안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자살시도자 등”으로 약칭하고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심리부검¹⁾은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자살자의 심리·행동·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살의 원인을 추정·검증하고 그에 기반하여 주변인의 죄책감과 고립감을 완화시키고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살시도자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동의대상에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려는

1) p. 15. 심리부검 소개자료 참조

취지로 보임. 다만,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서도 심리부검의 대상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은 배제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의2제2항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에게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바다 혹은 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 혹은 자살에 대하여도 그 가족 및 유족의 심리적 상태를 보살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19조의3제1항에서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긴급구조기관’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주어가 동일하게 구성된 안 제12조의2제2항에서 약칭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통신망에서의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될 때 그 삭제 및 차단에 대한 협조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생략) <u><신설></u>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③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u><신설></u>	④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19조의5에</u>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u>따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으로부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u> ⑤ -----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제출 등에-----. <u>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u> <u>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 요청</u> <u>3. 자살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u> <u>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u> ② <u>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u>

현행	개정안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③ <u>모니터링센터의 장은 자살유발정보 작성자에 대해 필요시 긴급구조기관에는 긴급구조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는 수사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u> 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모니터링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 ⑤ <u>그 밖에 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은 자살유발정보에 대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정의²⁾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다만,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또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연간 자살유발정보 신고는 매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 연간 자살유발정보 신고 및 자살로 인한 사망 현황 >

(단위 : 건·명)

연도	자살유발정보 신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2019	32,588	13,799
2020	90,772	13,195
2021	142,725	13,352
2022	234,064	12,906
2023	303,636	13,978

* 출처: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이 가능하게 되면,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신속하게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자살자 수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의 체계에 따르면, 현행법에서의 자살유발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정 요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정 요구 불응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이와 같은 일반적인 체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절차를 구성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의 삭제 및 차단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이러한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19조의4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등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제19조의4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모니터링센터의 장으로부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및 차단 등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표현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고,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차단 협조 요청은 제19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는 개정안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차단 요청을 할 권한⁵⁾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9조의4제4항은 삭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재정당국은 한국생명존중재단의 자살예방 관련 운영·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예산 규모를 2024년 260억 3,900만원에서 2025년 298억 5,700만원으로 14.7% 증액하였고, 경찰청에서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해정보 신고를 위한 명예경찰 제도(누리캡스)를 운영하고 있는바 별도의 법률개정과 센터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개정안에 따르면 이 권한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에게 있는데, 굳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이중적으로 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혹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의 장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다른 불법정보 처리 체계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 등을 고려 시 정부가 직접 내용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

문 의 처
02)6788-5498

① 심리부검 사업 개요

- **(목적)**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 추정·검증, 근거 기반 정책 수립
 - 자살 유족이 고인의 생애를 되짚어 보며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죄책감 감소·고립감 완화 등 건강한 애도에 도움을 줌
-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 2

② 면담 대상 ※ 고인·유족 모두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만 실시

- **(고인)** 경찰 조사에서 자살사망으로 확정된 자
- **(유족)** 고인의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등), 친구 등
 - * 자살사망자 유족 최대 4명까지 면담 신청 가능

③ 면담내용

-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와 생애 스트레스 사건 등을 파악

영역	면담 항목	
고인 문항	▶ 일반정보 ▶ 사망 정보, 사망 전 자살 관련 행동 ▶ 직업 및 경제영역 ▶ 가족 및 부부영역 ▶ 연애 및 대인관계 영역	▶ 성격 및 범죄경력, 성장 과정 영역 ▶ 건강상태 영역 ▶ 가족, 친구의 정신건강 관련 영역 ▶ 기타 스트레스 관련 영역 ▶ 정신과적 진단 면담(정신질환 추정)
유족 문항	▶ 일반정보 ▶ 유족의 심리·정서적 상태	▶ 유족의 반응 및 대처 ▶ 면담 종결 및 유족 제언

④ 해외사례

- **(핀란드)** 국가자살예방프로젝트(National Suicide Prevention Project; NSPP, 1986-1996)
- **(일본)** 자살예방과 유족지원을 위한 기초조사(2005-2009), 100명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조사(2007-2012)